

(對外祕)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7회 이사회 자료

2022. 12. 26.

법인사무국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7회 이사회 회의순

○ 사 회 : 이계안 이사장

1부. 예배

■ 사도신경	다같이 【1】
■ 찬송	- 27장 -	다같이 【2】
■ 기도	김병환 이사
■ 성경봉독	- 누가복음 5장 4~6절 -	다같이 【3】
■ 주기도문	다같이 【3】

2부. 이사회 회의

1. 개 회 선 언	사회자
2. 전차 회의록 보고	조승래 과장 【5】
3. 법 인 보 고	조승래 과장 【8】
4. 평택대학교 현안보고	이동현 총장직무대행 【별첨1】
5. 회 무 처 리		
1호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10】
2호 규정 개정 건	【28】
3호 교원 신규임용 건	【78】
4호 교원 재임용 건	【88】
5호 교원 소속변경의 건	【104】
6호 총장 선출 계획 건	【114】
7호 정관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 건	【120】
8호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128】
9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136】
10호 기타안건	【138】
6. 보고사항	【140】
7. 폐 회	이계안 이사장

사 도 신 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일 460)

은혜와 사랑

T. Sasao, 1897

보통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Kyo made mamorare kitarishi wagami

어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삼상 7:12)

301

코신 은혜: 87&7D.

박재훈, 1967

1. 지 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혜 라
 2. 몸 도 도 시 연 약 하 나 새 힘 크 반 아 살 험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을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찌 이 루 말 하 라
 물 벗 거 운 이 집 주 으 게 사 랑 는 주 의 이 루 말 하 라
 무 저 운 짐 주 께 말 겨 주 의 은 나 도 해 족 하 다
 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험 한 산 펴 주 시 고
 나 를 위 해 예 비 하 신 고 향 산 집 에 돌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의 주 궂 안 에 서 고 찬 송 하 며 가 리 라
 아 버 지 의 품 안 에 서 영 원 토 록 살 리 라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b→G Cm→Am A^b→F G→E Fm→Dm F7→D7

✔ 성경말씀 : 누가복음 5장 4절~6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주 기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호,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건

1 법인사무국 2차 추가경정예산(안)

□ 2022회계연도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

(단위: 원)

구분	2022년 2차 추경예산	2022년 1차 추경예산	증감액	비고
수입예산	746,093,484	658,700,000	87,393,484	
지출예산	746,093,484	658,700,000	87,393,484	

- 수입부

- ① 교육부 국고보조금 감소 : △15,563,400원
- ② 지정기부금 증가 : 1,000,000,000원
- ③ 잡수입 증가 : 2,956,884원

- 지출부

- ① 유형고정자산의 집기비품매입비 감소 : △15,563,400원
- ② 일반관리비 중 소모품비 감소 : △25,000,000원
- ③ 직원보수 중 직원각종수당 증가 : 3,000,000원
- ④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증가 : 13,000,000원
- ⑤ 운영비 중 복리후생비 증가 : 2,000,000원
- ⑥ 운영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증가 : 2,000,000원
- ⑦ 운영비 중 행사비 증가 : 5,000,000원
- ⑧ 운영비 중 회의비 증가 : 10,000,000원
- ⑨ 기타교육외비용 중 잡손실 증가 : 20,000,000원
- ⑩ 예비비 증가 : 72,956,884원

□ 2022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

(단위: 원)

구분	2022년 2차 추경예산	2022년 1차 추경예산	증감액	비고
수입 예산	1,620,500,000	1,620,500,000	0	
지출 예산	1,620,500,000	1,620,500,000	0	

- 수입부

- 지출부

① 직원보수 중 직원급여 감소 : △200,000원

② 직원보수 중 직원상여금 증가 : 200,000원

별첨2)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부

2

평택대학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

1

자금 예산 총액

단위 : 천원

구분	3차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본예산
총액	45,421,825	42,969,593	44,394,182	43,979,790

※ 3차 추경 자금 총액은 2차 추경 대비 2,452,232천원 증가

2

수입예산 증감에 대한 주요 항목

1) 등록금 수입 감소

단위 : 천원

계정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학부생수업료	23,358,888	25,403,162	-2,044,274
대학원생수업료	3,195,560	4,088,436	-892,876

- 최종 2022학년도 등록현황으로 반영

2) 기부금 수입 증가

단위 : 천원

계정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일반기부금	5,135,443	235,443	+4,900,000

- 재정기탁금 기부 수입 반영

3)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

단위 : 천원

계정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교육부	8,897,450	8,539,063	+358,387
기타국고지원	327,080	275,450	+51,630

- **교육부** : 국가장학금 2억 7천만원, 사학혁신지원사업 8천만원 수입 증가
- **기타국고지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4천 5백만원 및 해외봉사 관련 지원금 6백만원 신규 편성

4) 대관 수입 증가

단위 : 천원

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대여료 및 사용료	1,179,256	1,112,793	+66,464

- 생활관 대여료 증가

3 지출예산 증감에 대한 주요 항목

1) 보수 항목 일부 증감

단위 : 천원

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교원법정부담금	1,115,528	1,027,425	+88,102
직원법정부담금	904,047	887,950	+16,097
시간강사료	911,751	924,939	-13,188
조교인건비	1,051,196	1,071,638	-20,442
직원급여	4,307,593	4,319,593	-12,000
임시직인건비	47,874	2,244	+45,630

- **법정부담금** : 23.2.28일자 퇴직 교원 3명, 직원 1명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편성
- **시간강사료** : 강의 시수 변동에 따른 예산 조정(방학 중 임금 포함)
- **조교인건비** : 조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 **직원급여** : 계약직원 퇴사에 따른 예산 감소
- **임시직 인건비**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경험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2) 장학금 : 대학+대학원

단위 : 천원

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교외장학금	7,871,300	대 학 : 7,827,300	7,602,300	+269,000
		대학원 : 44,000		
교내장학금	5,355,938	대 학 : 4,100,000	5,534,614	-178,676
		대학원 : 1,255,938		

-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수입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
- 교내장학금 : 학부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자체노력 기준(2022학년도 1인당 평균장학금 ₩1,358,515)에 따른 실질적인 교내장학금액으로 감액되었고, 대학원 역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장학금액으로 감액

3) 고정자산매입 금액 증가

단위 : 천원

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기계기구매입비	608,922	208,104	+400,818
집기비품매입비	758,434	662,913	+95,521

- 기계기구매입비 : 컴퓨터 실습실 2개 교체 비용(기자재 구매)
- 집기비품매입비 : 사학혁신지원사업의 일부 사업 예산 변경으로 증가

4) 예비비 금액 증가

항목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예비비	2,028,259	251,500	+1,776,759

- 재정기탁금 49억 중 2022학년도에 사용하는 금액 3,056,783천원을 제외한 1,843,217천원 포함

별첨3) 2022회계연도 평택대학교 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부

2호, 규정 개정 건

1 평택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제정	개정	폐기	총계
1	11	2	14

2 규정 제·개정·폐기 목록

순번	규정명	개·폐일	시행일	구분	비고
1	강의평가 규정	2022.00.00	2022.00.00	제정	A+
2	평택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A+
3	인권센터 운영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A-
4	인권센터 규정	2022.00.00	2022.00.00	폐기	A-
5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22.00.00	2022.00.00	폐기	A-
6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B+
7	직제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B+
8	평택대학교 학칙	2022.00.00	2022.00.00	개정	B
9	계절학기에 관한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B
10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B
11	포상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C
12	규정류관리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C
보고	교원인사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1월 중순 처리
	교원업적평정 규정	2022.00.00	2022.00.00	개정	

3 규정 제·개정·폐기 내용

1.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인권센터

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기구로서 적합한 규정 필요 ▶ 인권고충업무와 성고충업무의 통합(2020년 11월) 이후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분산되었던 규정 병합 필요 ▶ 외부인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하는 신고를 방지하여 구성원을 보호하는 규정 필요
2022.00.00. 제정
주무부서 : 인권센터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평택대학교 학칙 제15장 제58조 3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해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p>
<p>나. 성적·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p>
<p>3.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p>
<p>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 평가, 고용·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p>
<p>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p>
<p>5. "2차 피해"란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p>
<p>가. 피신고인이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p>

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대화·통신을 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라.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마.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피해 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인사규정, 정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모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1절 인권센터

제4조(조직) 센터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을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센터장은 인권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센터의 구성원) ① 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인권, 성희롱·성폭력)을 두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조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센터의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운영
2.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정책 수립
3.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예방 교육·홍보
4. 교직원(교원 및 직원)복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5. 기타 인권·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2. 센터 예·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논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12조(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인권센터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인권침해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고하지 못한다.

제13조(중재 및 위원회 회부)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인권고충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중재할 수 있다.

제14조(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권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5조(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호선으로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사건의 처리
3.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②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및 제외) ①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성실히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을 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8조(제척)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당사자의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4.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제19조(기피) ① 인권센터는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공지하고,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사자는 성·인권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비밀 유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은 피해자와 피신고인당 각 1회에 한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우
3.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기피신청 수용에 대한 가부와 제출된 위원의 사유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회피) ① 성·인권고충심의회 위원회 위원은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의 기피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성·인권고충심의회 회의) ① 센터장은 성·인권고충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성·인권고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성·인권고충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성·인권고충심의회 회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⑤ 센터장, 전문상담원, 직원, 연구원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인권고충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센터는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성·인권고충심의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 금지) 본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참고인은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재정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25조(사업) 센터는 교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사건 처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의 의사, 피해사유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총장에게 업무 또는 학습공간의 분리, 피해자의 심리치료연계, 인사조치 등 피해자의 신분 및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요청의 경우 총장에게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인권센터 운영 및 상담·사건처리·조사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칙 <제000호, 2018.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전부개정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설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신설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인권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2.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1) 학부 계약학과 정원 관련 조항 개정

개정 사유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제8조 제5항 개정 (2017.6.20. 개정)에 의하여 학칙 제65조의 내용을 법률에 맞게 학생정원 기준을 개정하고, [별표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협약서에 표기된 표에 따라 개정하나 현재 학부는 미운영중이라 별도의 [별표3]은 미기재</p>	
변경전	변경후
<p>제65조(정원) ① <u>산업 등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⑤항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다만 개설학부(과)는 정규과정 개설학부(과)로 제한한다.</u></p> <p>② <u>계약학과의 학과별 정원은 별표3에 의한다.</u> (신설 2017.02.16)</p>	<p>제65조(정원) ① <u>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단,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2.00.00.)</u></p> <p>② <u>계약학과 운영시 학과별 정원은 별표3으로 따로 정한다.</u>(신설 2017.02.16., 개정 2022.00.0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3. 계절학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의 계절학기 명칭 통일성 ▶ 개설과목 내용에 명확한 구분 설명을 추가함. ▶ 폐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함. ▶ 강사로 지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함.

변경전	변경후
<p>제2조(시 기) 계절학기는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p> <p>제3조 (생략)</p> <p>제4조(개설과목) ① 개설과목은 교육과정상 전과목으로 하며, 개설희망과목신청을 받아 5명 이상인 경우 개설하거나, 5명 미만인 경우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통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9.06.24., 2021.06.29)</p> <p>② (삭제 2003.10.29.)</p> <p>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6학점으로 제한하며,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개설될 수 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02.29.)</p> <p>제5조(수강신청 및 폐강) ① 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개정2014.12.15.)</p> <p>②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p>④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담당부서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16.02.29.)</p> <p>제6조~제7조 (생략)</p> <p>제8조(강사료지급) ① 계절학기의 강사료는 당해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학생이 납입한 수강료만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5.03.08., 2014.12.15. 2014.12.15.)</p>	<p>제2조(시 기)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개정2022.00.00)</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개설과목) ① 개설희망과목은 신청학년도 교과과정에 준하여 신청을 받아 5명 이상인 경우 개설할 수 있다. 단, 5명 미만인 경우 담당 부서장(처장)의 승인 하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9.06.24., 2021.06.29., 2022.00.00)</p> <p>② (삭제 2003.10.29.)</p> <p>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6학점으로 제한하며,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개설될 수 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02.29.)</p> <p>제5조(수강신청 및 폐강) ① 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수입(수강료) 대비 지출(강사료)이 많은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담당 부서장(처장)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12.15., 2022.00.00)</p> <p>②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p>④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담당부서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16.02.29.)</p> <p>제6조~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강사료지급) ① 계절학기의 강사료는 당해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최종 등록된 수강인원이 개설기준 미충족일 때, 담당 부서장(처장)의 개설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수강학생이 납입한 수강료만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5.03.08., 2014.12.15. 2014.12.15., 2022.00.00)</p>

4.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교류의 이수범위에 개설과목 기준 변경 ▶ 야간학과 우리대학 해당없음 삭제.

변경전	변경후
<p>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2.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4. 야간학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한다.(개정 2009.06.12) 5. 본 대학교에서 기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단 재수강(C+이하 과목)은 학과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성적의 인정은 별도 규정 의한다. (개정 2016.08.25.) 6.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상급학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은 제6조에 따른다. 	<p>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과목은 신청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00.00) 2.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4. 삭제(개정 2009.06.12., 삭제 2022.00.00) 5. 본 대학교에서 기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단 재수강(C+이하 과목)은 학과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성적의 인정은 별도 규정 의한다. (개정 2016.08.25.) 6.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상급학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은 제6조에 따른다.

5. 강의평가 규정 개정(안) 재심의 : 교무연구처 수업팀

개정사유
▶ 지난 2022년 6월 16일 교무위원회시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조항 재심의

변경전	변경후
<p>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전임교원의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2.06.21)</p> <p>② 비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강의의 질개선을 위하여 소속학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책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1)</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전임교원의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2.06.21.)</p> <p>② 비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강의의 질개선을 위하여 소속학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책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1)</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강의평가 결과는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다음 학년도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1주일 전부터 수강 신청 종료 시까지 공개한다. (신설 2022.00.00)</u></p> <p>⑤ <u>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공개 항목 등 세부 사항은 강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2.00.00)</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 공개는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4년 02월)부터 시행한다.</u></p>

6. 평택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학적팀

개정 사유	
▶ 학적은행제 이수학점 및 전공학점 개정에 따른 편입생 자격 변경	
변경전	변경후
<p>제2조(자격) ①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시간제등록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단, 단일 전공학점 45학점 이상)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p> <p>② 삭제 (1999.05.25)</p>	<p>제2조(자격) ①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시간제등록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단, 단일 전공학점 40학점 이상)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개정 2022.00.00.)</p> <p>② 삭제 (1999.05.25)</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3년 편입학자(2021학번) 부터 적용한다.</p>

7.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교원 과반수노동조합의 소급동의 전제조건(합리적인 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정 전 규정과 현행규정의 차이를 조정하여 승진 및 재임용 최소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경과조치

- 2022.03.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2022.03.15.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 요청
- 2022.03.23. 민주교수노동조합 규정 개정 소급동의
- 2022.03.30. 교무팀 2022-10,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 결재
- 2022.04.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으로 시정지시 조치사항 제출
- 2022.04.04. 학교법인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22.04. ~ 2022.07. 규정 개정(안) 검토
- 2022.08.10. 규정 개정(안) 설명 및 의견 청취-민주교수노동조합(교원 과반수 노동조합)
- 2022.09.07. 규정 개정(안)에 대해 민주교수노동조합 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취
- 2022.09.15.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심의
- 2022.10.05.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 「교원업적평정 규정」 개정(안) 심의
- 2022.10.12.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 「교원업적평정 규정」 개정(안) 심의
- 2022.10.19. 규정 개정(안) 1차 설명회(전임교원 22명 참석)
- 2022.11.02.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 「교원업적평정 규정」 개정(안) 심의
- 2022.11.10. 규정 개정(안) 2차 설명회(전임교원 8명 참석)
- 2022.11.2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교원인사 규정 보칙 제51조(정년트랙전환))

변경전	변경후																																				
<p>제28조(재임용 기준) ①~③ <생략></p> <p>④ 2차 재임용 심사기준</p> <p>1. 정년트랙 조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임용 최소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td> </tr> </tbody> </table> <p>2. 정년트랙 부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임용 최소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 </tr> </tbody> </table> <p>3. <생략></p> <p>제33조(승진기준) ①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승진소요 기간 동안 업적 결과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연구업적 또는 필수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또는 승진소요학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부교수 승진최소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05점 이상(70%)</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5편 이상</td> </tr> </tbody> </table> <p>단, 신규임용 후 부교수 승진 전까지 합계 2년 이상의 행정보직경력이 있는 조교수는 필수 연구업적을 국내 1급 학술지 2편으로 한다.</p>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부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05점 이상(70%)	필수 연구업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5편 이상	<p>제28조(재임용 기준) ①~③ <생략></p> <p>④ 2차 재임용 심사기준</p> <p>1. 정년트랙 조교수 <개정 2022.00.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임용 최소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td> </tr> </tbody> </table> <p>2. 정년트랙 부교수 <개정 2022.00.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임용 최소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 </tr> </tbody> </table> <p>3. <생략></p> <p>제33조(승진기준) ①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승진소요 기간 동안 업적 결과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연구업적 또는 필수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또는 승진소요학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부교수 승진최소기준 <개정 2022.00.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30점 이상(63.5%)</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td> </tr> </tbody> </table> <p>단, 신규임용 후 부교수 승진 전까지 합계 2년 이상의 행정보직경력이 있는 조교수는 필수 연구업적을 국내 1급 학술지 2편으로 한다.</p>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부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30점 이상(63.5%)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부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05점 이상(70%)																																				
필수 연구업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5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구 분	재임용 최소 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부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30점 이상(63.5%)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변경전	변경후																								
<p>2. 교수 승진최소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제 9장 보칙</p> <p>제51조(정년트랙전환) ①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구)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012년 7월 22일 전임강사제 폐지로 인한 조교수 자동 승진자 및 2012년 9월 이후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자. 교원인사규정 (2016.12.15.개정 이전 규정)의 다음의“교수 승진기준”을 만족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연평균 750점 이상</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자.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	필수 연구업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연평균 750점 이상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p>2. 교수 승진최소기준 <개정 2022.00.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제 9장 보칙</p> <p>제51조(정년트랙전환) ①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구)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012년 7월 22일 전임강사제 폐지로 인한 조교수 자동 승진자 및 2012년 9월 이후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자. 교수 승진 최소기준을 만족한 자 <개정 2022.0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td> </tr> <tr> <td>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자. 교수 승진 최소기준을 만족한 자 <개정 2022.00.00.>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																								
필수 연구업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연평균 750점 이상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변경전	변경후												
<p>2. 교원인사규정(2016.12.15. 개정 규정)의 “교수 승진기준”을 만족한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연구업적</td> <td>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td> </tr> </tbody> </table> <p>③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p>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수 승진 최소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적평정 점수</td> <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연구업적</td> <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 </tr> </tbody> </table> <p>③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28조(재임용 기준) 제4항, 제33조(승진 기준) 제1항, 제51조(정년트랙전환)의 최소기준 적용은 1년간 유예하며, <u>함께 개정하는 「교원업적평정 규정」이 적용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1일자 재임용·승진 대상자부터 전체 교원에게 일괄 적용한다.</u></p> <p>② 필수 연구업적 논문 편수는 「교원업적평정 규정」[별표2] 연구업적 평정 항목, 기준 및 평정과 주해,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업적산정 세부지침」의 1. 재임용 필수업적 산정기준 환산율을 적용한다.</p>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8. 교원업적평정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 [별표1] 교육업적 평정항목 중 수업시수 및 수업강좌수 산정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전						변경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교육 중심 형	연구 중심 형	만63 세교 원형					교육 중심 형	연구 중심 형	만63 세교 원형	산학 친화 형			
개인평가	근아근 90대근개정 *필수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수업팀	개인평가	교육 내용 및 과정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1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50	20	5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30	10	5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50	수업팀
			배점한도	600 (90)	300 (40)	800 (90)					배점한도	600 (130)	300 (70)	800 (110)	150 (70)	

주) 1~7. <생략>

8. 수강시수 및 강좌 수는 대학원을 포함하며, 1학기 산정 시 배점에 2를 곱하여 산정한다. 트랙별 산식은 아래표와 같다.(개정 2019.06.24., 2022.02.28.)

주) 1~7. <생략>

8. 수강시수 및 강좌 수는 대학원을 포함하며, 1학기 산정 시 배점에 2를 곱하여 산정한다. 트랙별 산식은 아래표와 같다.(개정 2019.06.24., 2022.02.28., **2022.00.00.**)

변경전				변경후			
구분	트랙 유형	학기당 기준 시수/강좌수	산정식	구분	트랙 유형	학기당 기준 시수/강좌수	산정식
수업 시수	교육중심형 트랙	12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2$, 50점 상한	수업 시수	교육중심형 트랙	12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15$, 6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9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2$, 2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9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15$, 3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12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2$, 5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12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15$, 60점 상한
	산학친화형	9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2$, 20점 상한		산학친화형	9	$((\text{연간시수}-\text{연간기준시수}) \times 4) + 15$, 30점 상한
강좌 수	교육중심형 트랙	4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4$, 30점 상한	강좌 수	교육중심형 트랙	4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4) + 15$, 6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3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1.5$, 1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3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4) + 15$, 3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4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8) + 2$, 5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4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4) + 15$, 60점 상한
	산학친화형	3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1.5$, 10점 상한		산학친화형	3	$((\text{연간강좌수}-\text{연간기준강좌수}) \times 4) + 15$, 30점 상한

* 기준시수 초과 여부 상관없이 산출식 적용

* 기준시수 초과 여부 상관없이 산출식 적용
* 수업시수와 강좌수의 트랙유형별 점수를 산정식으로 산정하되, 마이너스(-)점수 발생 시 0점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개정 규정 중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에서 수업 평정항목의 수업시수와 수업강좌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원 업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변경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교육중심형	연구중심형	만63세교원형	
학과평가기	교육역량향상프로그램 *필수	-학과 실행보고서 제출 -1건당 5점, 연2회 인정	10	10	10	학생지원팀
	해당학과의 취업률 *필수	-당해년도 2월 졸업자 -취업자(정규+비정규포함) -(취업생수/졸업생수)×10	10	10	10	취업진로팀
	해당년도 교육사업계획서 총괄성 *필수	-매년초 학과교육 및 사업계획서	5	5	5	기획예산팀
	해당학과의 재학률 *필수	(정원내재학생수/입학정원)*30	30	30	30	학적팀
	해당학과의 중도탈락률 *필수	*주석 배점표 참조	15	15	15	학적팀
개요평가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30	20	30	수업팀
	강의계획서 개선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20	10	20	수업팀
	강의이행상태 (휴강및결강) *필수	(감점) 무단결강 1회 -10점, 단, 보강한 경우 한 학기 1회, 총 2회 무감점	0	0	0	수업팀
	출석 관리의 적절성 *필수	10점:매주 입력 시 5점:입력기간 내 2회 이하 미입력시 0점:입력기간 내 3회 이상 미입력시	10	10	10	학적팀
	성적평가 엄정성 *필수	1. 성적평가결과의 피드백 제공 미준수 과목당 2점 감점	0	0	0	학적팀
		2. 학칙에서 정한 성적분포의 적정성 준수 20*(준수과목/총과목)	20	20	20	학적팀
	교수법 개선 *선택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1회 5점 -교수 콜로키움 참여 1회 5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참여 1회 3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강사 1회 10점 -중점수업(MOOC) 참여 1회 20점 -중점수업(FL, PBL) 참여 1회 10점 -CQ보고서 제출 과목당 10점	50	10	50	교수학습지원센터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50	20	5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30	10	5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수업팀	
온라인강의 *선택	-1과목 온라인 강의(블렌디드강의 포함) 제작 및 개설 시 10점 단, 동일과목으로 다음연도에 점수 반영이 되려면 강의 콘텐츠를 새로 촬영 및 제작을 해야함	20	20	20	수업팀	
특별강의 *선택	-평생·국제교육팀 1강좌 10점 -특강1회5점, 연2회 인정	10	0	10	각부서	
교원지도	학생상담	1. 학생 상담 지도 *필수 -1회 15점(연구트랙은 10점), 학기당 1인 1회 실시 후 입력	30	20	30	학생지원팀
		2. 상담개선 *선택 학생 상담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여 1회 5점	10	10	10	학생생활상담센터
	특별지도	1. 논문지도 *필수 -석박사 1명 5점 (연 4회 인정) -학사 1명 2점(상한 5명) -증명서제출	20	0	20	수업팀 대학원교학팀
		2. 캡스톤디자인 *필수	20	10	20	교육혁신센터
창업지도 *필수	3. 창업 지도 -교내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5점 -교외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10점	20	10	30	창업지원센터	

[변경전]

교 내 행 사	취업지도 *필수	4. 취업 지도 취업자 1인 성공시 20점	40	0	100	취업진로팀
	역량 프로그램 지도 *필수	- 보충학습지도 1건당 5점 - 비교과 프로그램 1건당 20점 최대 40점 - 자율학기 교과목 지도 1건당 50점/30점/20점/10점 (학점베이스)	100	40	100	각부서
	학생행사참여지도 *필수	-(감점) 불참 1건당 -5점 감점	0	0	0	학생지원팀
	학내교육행정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0	0	0	각부서
	대학행사 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성교육 미참석 1회당 -5점 감점	0	0	0	각부서
	학교 및 학과 홍보 *필수	-본인증명서 제출 -1건당 10점, 연2회 인정 -63세트랙은 1건당 20점	20	0	100	입학홍보팀
	배점한도			600 (90)	300 (40)	800 (90)

변경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교육 중심 형	연구 중심 형	만63 세교 원형	산학 친화 형		
학과평가	교육역량향상프로그램 *필수	-학과 실행보고서 제출 -1건당 5점, 연2회 인정	10	10	10	10	학생지원팀	
	해당학과의 취업률 *필수	-당해년도 2월 졸업자 -취업자(정규+비정규포함) -(취업생수/졸업생수)×10	10	10	10	10	취업진로팀	
	해당년도 교육사업계획서충 실성 *필수	-매년초 학과교육 및 사업계획서	5	5	5	5	기획예산팀	
	해당학과의 재학률 *필수	(정원내재학생수/입학정원)*30	30	30	30	30	학적팀	
	해당학과의 중도탈락률 *필수	*주석 배점표 참조	15	15	15	15	학적팀	
개인평가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30	20	30	20	수업팀	
	강의계획서 개선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20	10	20	10	수업팀	
	강의이행상태 (휴강및결강) *필수	(감점) 무단결강 1회 -10점, 단, 보강한 경우 한 학기 1회, 총 2회 무감 점	0	0	0	0	수업팀	
	출석 관리의 적절성 *필수	10점:매주 입력 시 5점:입력기간 내 2회 이하 미입력시 0점:입력기간 내 3회 이상 미입력시	10	10	10	10	학적팀	
	성적평가 엄정성 *필수	1. 성적평가결과의 피드백 제공 미준수 과목당 2점 감점	0	0	0	0	학적팀	
		2. 학칙에서 정한 성적분포의 적정성 준수 20*(준수과목/총과목)	20	20	20	20	학적팀	
	교수법 개선 *선택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1회 5점 -교수 롤로키움 참여 1회 5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참여 1회 3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강사 1회 10점 -중점수업(MOOC) 참여 1회 20점 -중점수업(FL, PBL) 참여 1회 10점 -CQ보고서 제출 과목당 10점	50	10	50	10	교수학습지 원센터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1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50	수업팀		
온라인강의 *선택	-1과목 온라인 강의(블렌디드강의 포함) 제 작 및 개설 시 10점 단, 동일과목으로 다음연도에 점수 반영이 되려면 강의콘텐츠를 새로 촬영 및 제작을 해야함	20	20	20	20	수업팀		
특별강의 *선택	-평생·국제교육팀 1강좌 10점 -특강1회5점, 연2회 인정	10	0	10	0	각부서		
교역기타	학생상담	1. 학생 상담 지도 *필수 -1회 15점(연구트랙은 10점), 학기당 1인 1 회 실시 후 입력	30	20	30	20	학생지원팀	
		2. 상담개선 *선택 학생 상담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여 1회 5 점	10	10	10	10	학생생활상 담센터	
	특별 지도	논문 지도 *필수	1. 논문지도 -석박사 1명 5점 (연 4회 인정) -학사 1명 2점(상한 5명) -증명서제출	20	0	20	0	수업팀 대학원교학 팀
		캡스톤디자인*필 수	2. 캡스톤디자인 지도 팀당 10점	20	10	20	10	교육혁신센 터
창업지도 *필수	3. 창업 지도 -교내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5점 -교외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10점	20	10	30	10	창업지원센 터		

변경후

2점 10회 40회		취업지도 *필수	4. 취업 지도 취업자 1인 성공시 20점	40	0	100	<u>0</u>	취업진로팀
		역량프로그램 지도 *필수	- 보충학습지도 1건당 5점 - 비교과 프로그램 1건당 20점 최대 40점 - 자율학기 교과목 지도 1건당 50점/30점/20점/10점 (학점베이스)	100	40	100	<u>40</u>	각부서
		학생행사참여지도 *필수	-(감점) 불참 1건당 -5점 감점	0	0	0	<u>0</u>	학생지원팀
	학내교육행정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0	0	0	<u>0</u>	각부서	
	대학행사 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성교육 미참석 1회당 -5점 감점	0	0	0	<u>0</u>	각부서	
	학교 및 학과 홍보 *필수	-본인증명서 제출 -1건당 10점, 연2회 인정 -63세트랙은 1건당 20점	20	0	100	<u>0</u>	입학홍보팀	
배점한도				600 (130)	300 (70)	800 (110)	150 (220)	

9. 포상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관련 규정 조항 자구수정 ▶ 포상의 종류를 교내와 교외로 구분하고 포상대상자 추천 절차를 명시함. ▶ 포상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포상이력 평정반영에 대한 근거규정 추가 	
변경전	변경후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6조(표창) 및 직원인사규정 제29조(표창) 내지 제31조(표창 수위자의 특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상) 포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과 기타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신설 2022.00.00]</p> <p>제3조(포상의 종류) ① 본 대학교 포상은 "공로포상", "제안포상", "근속포상", "기금유치 포상" 등으로 구분한다. 1. ~ 4. 생략 5. (신설 2022.00.00) ② 생략</p> <p>제4조(포상의 신청) ① 각 부서의 장은 포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공적조서(별지서식 1호)를 첨부하여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으로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1., 2016.02.26., 2019.06.24.) ② 포상을 신청할 때에는 교원은 교무처장을 경유하고, 직원은 기획평가처장을 경유하</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9조(포상) 및 직원인사규정 제29조(표창) 내지 제30조(표창의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0.00)</p> <p>제2조(대상) 포상대상자는 <u>공적조사에 사전 동의하고</u> 본 대학교 교직원과 기타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개정 2022.00.00)</p> <p>제2조의 2(포상대상 제한) 포상대상의 제한은 관계 법령인 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2.00.00)</p> <p>제3조(포상의 종류) ① 본 대학교 포상은 "공로포상", "제안포상", "근속포상", "기금유치 포상" 등의 "<u>교내포상</u>"과 <u>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교외포상"</u>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0.00) 1. ~ 4. 현행과 같음 5. "교외포상"은 교육부 등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포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신설 2022.00.00)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u>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u> (개정 2015.04.21., 2016.02.26., 2019.06.24., 2022.00.00.) 1. 교내포상은 각 부서의 장이 포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공적조서(별지서식 1호)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추천하고 인사담당 부서는 이를</p>

변경전	변경후
<p>여 인사위원회에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5.04.21., 2019.06.24.)</p> <p>제5조(포상의 심의) 포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포상은 예외로 한다.</p> <p>제6조(포상 시기) 근속포상은 매년 1월 시무식 때 시행하고 그 밖의 포상은 필요한 때에 시행한다.</p> <p>제7조(평정 반영) ① 포상자가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고과평정에 반영하고, 직원인 경우에는 직원인사고과 평정에 반영한다. ② 총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와, 기타 외부로 받은 포상의 경우에도 같다.</p>	<p>조사 및 검토하여 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신설 2022.00.00)</p> <p>2. 교외포상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수여기관의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지서식2호에 공적 사실과 평판을 확인하여 포상공적 심사위원회 상신한다. (신설 2022.00.00)</p> <p>②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은 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하되 근속포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4.21., 2019.06.24., 2022.00.00.)</p> <p>제5조(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산하에 둔다. (개정 2022.00.00) ② 위원회의 구성은 재적 인사위원중 호선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2.00.00)</p> <p>제6조(포상 시기) 현행과 같음.</p> <p>제7조(평정 반영) 교직원의 포상 이력은 인사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2.00.00) ② (삭제 2022.00.0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10.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개정 사유	
<p>▶ 제8조(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규정과 세칙 등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자구수정과 규정내 세부 조항 시행을 위한 세칙,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p>	
변경전	변경후
<p>제8조(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 및 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0.08.24.)</p> <p>②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과 개폐는 업무소관부서장과 기획평가처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단, 직제, 교직원인사,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4.23., 2019.06.24.)</p>	<p>제8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① 학칙을 제외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 및 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08.24., 2022.00.00)</p> <p>② 규정내 조항의 세부 시행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과 개·폐는 상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업무 소관 부서장과 기획평가처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단, 직제, 교직원인사, 보수 및 퇴직금과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련된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23., 2019.06.24., 2022.00.0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1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1) 특임교수는 특별한 직무를 맡기고자 채용하는 교수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충분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바, 현행 65세 이하 임용 원칙은 이에 맞지 않아 개정함. 2) 특별한 분야의 경력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채용제도로 개정함. 3) 특임교수는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보다 다른 분야(경영, 운영, 기획 등)의 역량이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에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장도 추대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함.	
변경전	변경후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관 등) ① ~ ③ <생략>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는 예외로 한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관 등) ① ~ ③ <생략>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00)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석좌교수와 명예교수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석좌교수와 명예교수, 특임교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00)
제26조(추대절차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학과(또는 피어선칼리지)에서 추대 2. 대학(원)장이 추대 3. 교무연구처장이 추대 <신설>	제26조(추대절차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학과(또는 피어선칼리지)에서 추대 2. 대학(원)장이 추대 3. 교무연구처장이 추대 4. 기타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총장이 추대(신설 2022.12.00)

12. 직제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p>[개정 사유] 초빙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임교원에게도 직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한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p>	
<p>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1. ~ 2. 생략 3. 교원은 학생을 교수하고 지도하며, 별도의 직책 또는 직무가 부여된 경우 이를 담당해야 한다. 단, 비전임교원의 직책 및 직무는 부속 또는 부설 기관에 한해 <u>비전임 교원 중 초빙교수만이 할 수 있다.</u>(개정 2021.12.27.)</p>	<p>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1. ~ 2. 생략 3. 교원은 학생을 교수하고 지도하며, 별도의 직책 또는 직무가 부여된 경우 이를 담당해야 한다. 단, 비전임교원의 직책 및 직무는 부속 또는 부설 기관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u>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u>(개정 2021.12.27., 2022.12.00)</p>

13. 인권센터 규정 폐지 : 인권센터

개정 사유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신설에 따른 구 인권센터 규정 폐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대학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장 인원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인권고충심의회위원회, 행정실, 상담실을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과 부참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등)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인권센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의 채용은 본교 「연구원 채용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인권센터 내에 상담·조사 및 교육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채용은 본교 「직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
2.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3.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상담, 보호 업무
4. 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인권고충심의회 회부
5. 인권침해 가해자 교육 및 관리
6. 인권침해 사건처리 관련 규정 제·개정
7.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감정폭력 상담 및 관련 업무(개정 2020.11.06)
8.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한 업무(신설 2020.11.06)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위원장을 겸하며,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국제처장, 교목실장, 성고충상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직원 2명과 학생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내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가. 학내 교육, 연구, 행정에서 성평등정책의 수립, 교육과 시행에 대한 평가
 - 나. 본교 구성원 중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
 - 다.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라. 그 밖에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평가
 - 나. 장애인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평가
 - 다. 외국인의 교육과 생활 지원에 대한 평가
 - 라. 그 밖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4.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3. 인권보고서 심의
4. 예산과 결산 심의
5.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인권고충심의회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제4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2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의 인권·권익 침해 등에 관한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해당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3. 그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 임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제15조(심의위원회 제척 및 기피) ① 위원, 센터장, 전문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인권·권익 침해 등 사건과 관련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 인권·권익 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권고충심의회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 신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피) 위원 등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의 교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센터장, 전문위원, 연구원,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건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신고의 기각) ① 위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실과 상담실

제21조(행정실과 상담실의 구성) 행정실과 상담실에는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행정실과 상담실은 인권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건처리 및 절차

제23조(신고 및 조사의 대상)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센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24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23조 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원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확정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넷, SNS 등 매체에 무단으로 전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위원회에서의 제1항에 의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건 처리)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중재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④ 센터장은 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해당사건을 소인권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당사자의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요청)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8조 또는 제28조의 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32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① 당사자가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명령, 접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의 보호)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36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7조(불이익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0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00호, 2018.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준칙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〇〇월 〇〇일부로 폐지한다.

1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 인권센터

개정 사유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신설에 따른 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폐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즉, 성폭력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 ②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신설 2014.12.15)
- ③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 ④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가정폭력을 말한다. (신설 2014.12.15.)
- ⑤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5.)
- ⑥ “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5.)
- ⑦ “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5.)
- ⑧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5.)
- ⑨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5.)
- ⑩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12.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직원(계약직, 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성폭력·성희롱을 포함한다.(개정 2016.12.15.)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신설 2016.12.15.)

- ①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4조 변경 및 명칭 변경)(2016.12.15.)

-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신설 2016.12.15.)
-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사건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5.)

제2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개정 2006.04.19., 2014.12.15)

제1절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고충 상담소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제6조(설치) (5조 변경, 2016.12.15.)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고충상담소(이하 "성 고충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2019.06.24., 2020.11.06.)

제7조(업무) (6조 변경, 2016.12.15.)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4.19., 2014.12.15)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06.04.19., 2014.12.15.)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신설 2014.12.15.)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5.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업무 (개정 2006.04.19., 2014.12.15)
6. 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개정 2006.04.19., 2014.12.15)

제8조(구성) (7조 변경, 2016.12.15.)

- ① 성 고충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소장이 성 고충상담 소장을 겸하고 성 고충상담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성 고충상담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2019.06.24.)
- ② 성 고충상담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비상근 자문위원과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2020.11.06.)

제2절 고충심의위원회

제9조(교육) 성 고충상담원은 전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15.)

제10조(위원회) (신설, 2016.12.15.)

- ① 성고충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12.15.)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 (개정 2006.04.19., 2014.12.15)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개정 2006.04.19., 2014.12.15)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개정 2006.04.19., 2014.12.15)
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개정 2006.04.19., 2014.12.15)
5.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개정 2006.04.19., 2014.12.15)

제11조(구성) (9조 변경, 16.12.1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학심리상담원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이때 인권센터 소장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15., 2019.06.24., 2020.11.06.)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 팀장이 된다.(신설 2016.12.15., 개정 2019.06.24., 2020.11.06.)

제12조(회의) (10조 변경, 2016.12.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개정 2006.04.19., 2014.12.15)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3조(상담) (11조 변경, 2016.12.15.) ① 성고충상담소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원을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2019.06.24.)

② 성고충상담소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19., 2014.12.15., 2016.12.15.)

제14조(신고) (신설 2016.12.15.)

- ①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신설 2016.12.15.)
- ② 성고충상담소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고충상담소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소에 이첩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 ③ 성고충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 ④ 성고충상담소장은 신고된 사건을 14일 이내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제15조(심의의결) (신설 2016.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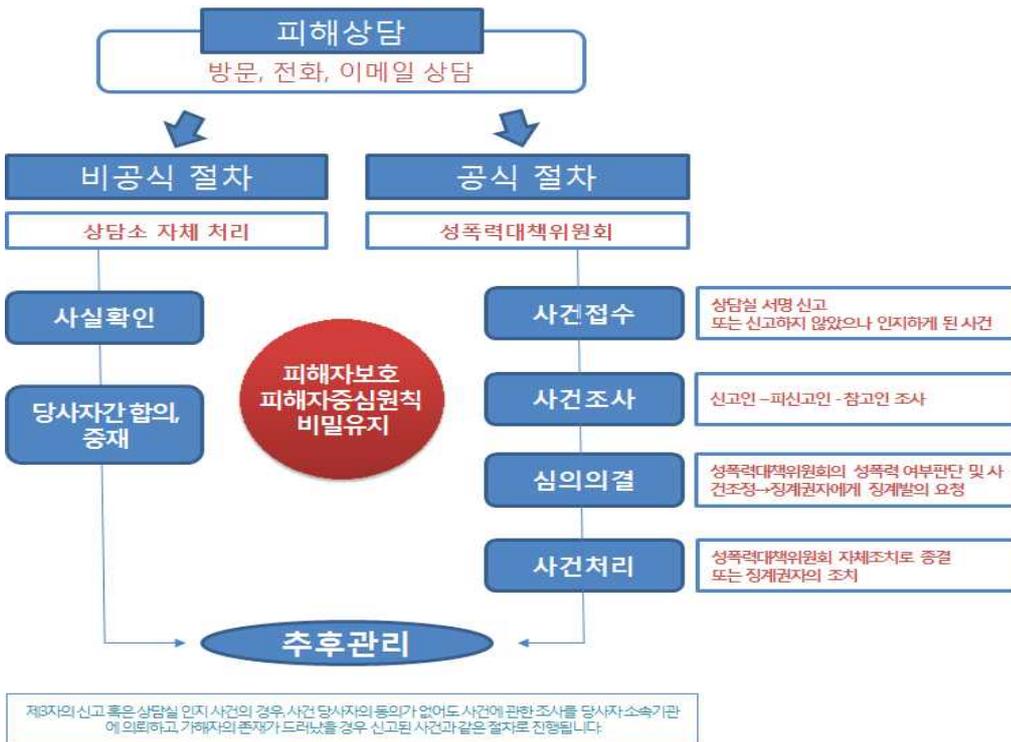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에서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6.12.15.)
-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신설 2016.12.15.)

제16조(징계요구 및 조치) (신설 2016.12.15.)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신설 2016.12.15.)
 1. 피해자 보호 조치
 2. 가해자의 사과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
 5. 기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 ③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6.12.15.)

제17조(사건 처리 절차)(신설 2016.12.15.)

- ① 사건 처리는 다음에 제시한 표에 따라 신고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게 진행한다.(신설 2016.12.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로 폐지한다.

3호, 교원 신규임용 계획 건

1 2023-1학기 신임교원 수급계획(안)

■ 전임교원 모집분야

모집분야	전공	인원	비 고
계		2	
스마트콘텐츠전공	컴퓨터 전공(인공지능, 영상처리, 가상현실임베디드, 엣지컴퓨팅 가상화 분야 등)	1	-정년트랙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1	-정년트랙

2 교원인사위원회 2023-1학기 교원 수급조사 결과 및 채용 분야와 인원 심의·의결

□ 근거

-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유지
- 각 학과 및 전공 교원 수급조사 결과

□ 경과조치

- 2022.10.21. 교무팀 2022-58 2023-1학기 교원수급조사 의뢰 협조전 학과 발송
- 2022.11.23. 교무팀 2022-100 2023-1학기 전임교원 수급조사 결과보고(전임 5명)
- 2022.11.23. 교원인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의결(채용분야 및 인원) 심의·의결
- 2022.12.13. 2023-1학기 1차 전임교원 초빙계획 기안결재

□ 교원 수급조사 결과

<단위 : 명>

전임	비전임	계
5	▶ 현재 학과(전공)별 재임용 심사 중 ▶ 차기 인사위원회 심의	5

※ 2022.10.01.자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 붙임 참조

□ 2022년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 기준 및 확보 예시

<단위: 명, %>

추가 수급	전임교원 수	교원법정정원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기준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134	190	172	70.53	77.91	
<현재>	135	190	172	71.05	77.91	
1	136	190	172	71.58	78.49	
2	137	190	172	72.11	79.07	
3	138	190	172	72.63	79.65	대학인증평가 61%
4	139	190	172	73.16	80.23	대학역량진단평가 74.558%
5	140	190	172	73.68	80.81	
6	141	190	172	74.21	81.40	
7	142	190	172	74.74	81.98	
8	143	190	172	75.26	82.56	

□ 2022. 10. 1. 자 교원확보율 (정보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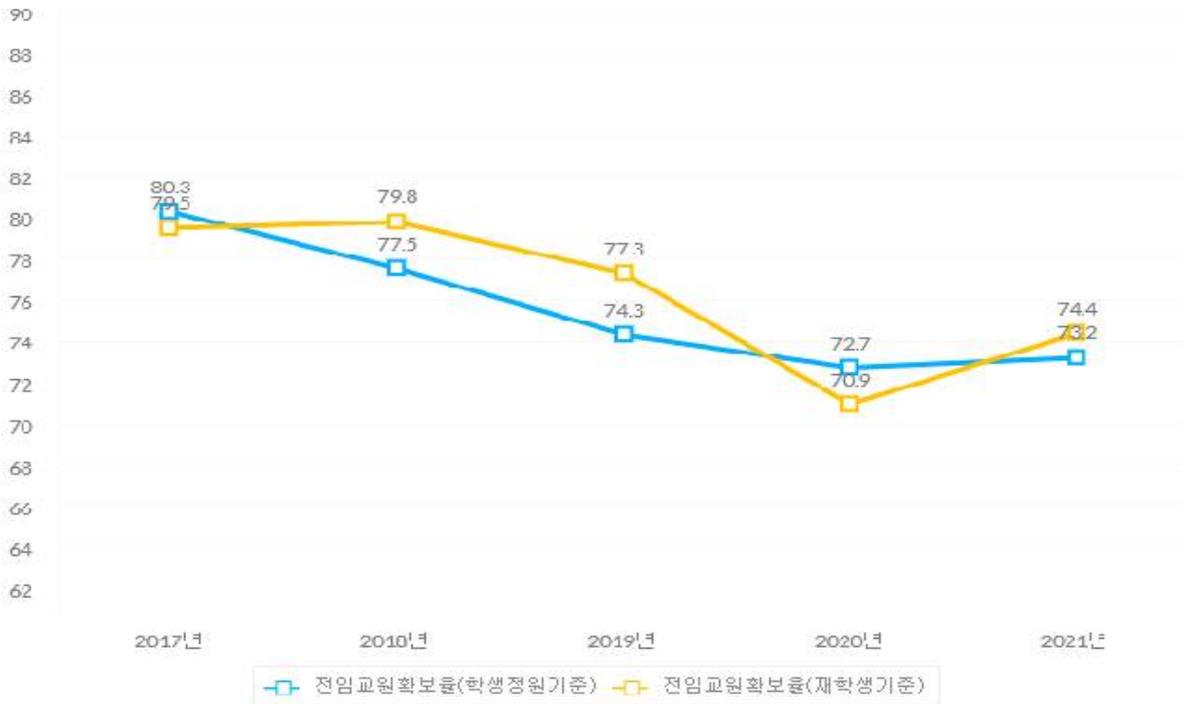
구분	학생현황						교원법정정원(B)		전임교원(C)															
	학부		대학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재학생기준 산출시 제외교원수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인문사회	1,412	1,431	965	567	2,377	1,998	96	80	44	17	12	4	27	13	83	34	0	0						
자연과학	1,120	994	0	0	1,120	994	56	50	11	3	5	4	13	7	29	14	0	0						
공학	116	108	0	0	116	108	6	6	1	0	1	0	1	0	3	0	0	0						
예체능	600	485	34	12	634	497	32	25	12	9	5	2	3	1	20	12	0	0						
소계	3,248	3,018	999	579	4,247	3,597	190	161	68	29	23	10	44	21	135	60	0	0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3,248	3,018	999	579	4,247	3,597	190	161	68	29	23	10	44	21	135	60	0	0						
구분	겸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교원정원 대비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	계														
	환산인원	환산인원	인정인원(D)	인정인원(E)	겸임+초빙교원(F)	환산인원(G)					환산인원(I)	환산인원(H)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인문사회	7	4	7	7	4	4	11	11	3	26	0	40												
자연과학	1	0	1	1	0	0	1	1	0	4	0	5												
공학	0	0	0	0	0	0	0	0	0	0	0	0												
예체능	6	0	6	5	0	0	6	5	0	19	0	25												
소계	14	4	14	13	4	4	18	17	3	49	0	70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14	4	14	13	4	4	18	17	3	49	0	70												
구분	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기타포함		강사포함		시간강사포함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기타포함		강사포함		시간강사포함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인문사회	86.46	103.75	93.75	112.5	97.92	117.5	101.04	121.25	128.13	153.75	128.13	153.75	28.64	24.07	26.41	22.2	25.29	21.26	24.51	20.6	19.33	16.24	19.33	16.24
자연과학	51.79	58	53.57	60	53.57	60	53.57	60	60.71	68	60.71	68	38.62	34.28	37.33	33.13	37.33	33.13	37.33	33.13	32.94	29.24	32.94	29.24
공학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38.67	36	38.67	36	38.67	36	38.67	36	38.67	36	38.67	36
예체능	62.5	80	81.25	100	81.25	100	81.25	100	140.63	176	140.63	176	31.7	24.85	24.38	19.88	24.38	19.88	24.38	19.88	14.09	11.3	14.09	11.3
소계	71.05	83.85	78.42	91.93	80.53	94.41	82.11	96.27	107.89	126.71	107.89	126.71	31.46	26.64	28.5	24.3	27.76	23.66	27.22	23.21	20.72	17.63	20.72	17.63
의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71.05	83.85	78.42	91.93	80.53	94.41	82.11	96.27	107.89	126.71	107.89	126.71	31.46	26.64	28.5	24.3	27.76	23.66	27.22	23.21	20.72	17.63	20.72	17.63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

(단위 : 명, %)

공시연도	학생현황 학생정원 기준(대학원포함)	학생현황 재학생 (대학원포함)	전임교원 학생정원기준	전임교원 재학생기준	교원법정정원 학생정원기준	교원법정정원 재학생기준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정원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기준
2017	4,700	4,778	167	167	208	210	80.3	79.5
2018	4,608	4,447	158	158	204	198	77.5	79.8
2019	4,518	4,364	150	150	202	194	74.3	77.3
2020	4,441	4,551	144	144	198	203	72.7	70.9
2021	4,397	4,354	145	145	198	195	73.2	74.4

(단위: %)



교원 신규채용 관련 규정 개정 검토

(2022.12.13. 교무팀)

□ 개황

-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6회 이사회 기타안건(교원의 신규 임용 시 임용계획의 이사회 승인 여부 건) 논의사항
- 법인사무국 공문 피어선-1226(2022.12.09.) ‘제217회 (학)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개최 관련 안내 사항’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임용계획은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규정도 개정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사유

- 이사회 논의에 따른 법인사무국 교원인사 규정 개정 검토 요구
- 교원 신규 임용 채용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립하고자 함

□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7조(신규채용) ① <생략> ② 교무연구처장은 채용분야 및 인원 에 대한 의견을 각 학과(전공, 부서)로 부터 수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렴된 의견은 교무연 구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에서 법정교원 수, 전임교원 대비 학 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채용 분야 및 인원을 확정한다. ④~⑥ 생략	제7조(신규채용) ① <생략> ② 교무연구처장은 채용분야 및 인원 에 대한 의견을 각 학과(전공, 부서)로 부터 수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렴된 의견은 교무연 구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에서 법정교원 수, 전임교원 대비 학 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채용 분야 및 인원을 확정한다. 단, 그 외 채용심사 절차 및 진행 중 세부계획 변경 등은 이사장이 승인하여 시행 한다.<개정 2022.00.00> ④~⑥ 생략	전임교원 신규 임 용 채용계획 구분 을 통해 업무효율 성 및 적정성 증대 (이사회) 채용 분야 및 인원 심의 확정 (이사장) 그 외 채 용심사 절차, 전공 변경 등 세부계획 승인

4호, 교원 재임용 건

2023.03.01.자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21명)

소속	직급	성명	최초임용일	임용기간	구분	승인여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정보통신학과						
ICT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ICT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ICT융합학부 미디 어디자인전공						
공연영상콘텐츠학 과						
ICT융합학부 스마 트콘텐츠전공						
국제지역학부 미 국학전공						
스마트자동차학과						
아동·청소년교육 상담학과						

통번역대학원 통 번역학과						
국제도시부동산학 과						
피어선칼리지						
피어선칼리지						

□ 2023.03.01. 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현황

5호, 교원 소속변경의 건

1 전임교원 소속 이동 제청 (피어선칼리지 소속 => 스마트모빌리티학과)

1. 소속 이동 제청사항

- 대상 : 피어선칼리지
- 변동사항 : 피어선칼리지 소속에서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소속으로 변경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스마트 모빌리티학과 소속 이동 요청 심의(피어선칼리지 전임교원 이00)>

- ▶ 심의결과 : 피어선칼리지 이00 교수를 스마트 모빌리티학과 소속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후속절차를 진행하며, 이00 교수가 약속한대로 기존에 담당했던 CT(Computational Thinking) 운영책임과 교양필수 1과목 담당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피어선칼리지 대학장과 교무연구처장이 확인하도록 결의

3. 스마트자동차학과 요청사항

- 스마트자동차학과는 협조전 2022-21(2022-09-07)로 교내 교원 중 전산학 전공자의 소속 변경을 요청
- 학과 학생 정원이 50명으로 증원되어 교원확보가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전산분야의 교원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임
-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산학을 전공한 교내 교원에게 의사를 묻고, 학과 전임교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속 변경 협조를 요청하였음

4. 경과조치

- 2022.09.08. 스마트자동차학과 2022년도 교내 교원 소속변경 요청 건 접수(스마트자동차학과 2022-21)
- 2022.09.08. 피어선칼리지 교원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교무팀 2022-51)
- 2022.10.04. 피어선칼리지 응신서 접수(피어선칼리지 2022-26, 소속교원 23명 중 19명 의견수렴)
- 2022.10.13. 피어선칼리지 교원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재요청(교무팀 2022-57)
- 2022.10.20. 피어선칼리지 응신서 접수(피어선칼리지 2022-27, 외국인 교원 의견 수렴)
- 2022.11.23. 교원인사위원회 소속 이동 심의•의결

6호, 총장 선출 계획 건

□ **현행 제도와 대안 비교표**

구분	총장 후보 추천	총장 선출 방식	총장 임명
현행	이사장	이사회 의결	이사장
↓ (금번에 한해서만 진행)			
대안	가칭) 총장추천평가위원회 발족 후 모집 공고,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후보자 3인 이사회에 추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층 면접(PT) 평가 후 지명 투표를 통하여 총장 선임 의결	이사장

□ **총장 선출 제도 관련 법인 임원 의견 수렴 결과**

- 조사 기간 : 2022년 12월 16일(금) ~ 19일(월)
- 조사 방법 :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설문 진행

7호, 정관 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 건

1 정관 변경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 사유

규정명	변경(개정) 사유	관련 법령	발의 부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 학원 정관	1)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input type="checkbox"/>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학교법인들의 여성 임원 수는 현저하게 낮음 <input type="checkbox"/> 사학혁신지원사업 핵심과제로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이사를 포함하여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의안 결정 시 이사회 성비 균형으로 다원화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법인 사무국
	2)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현행법에는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시 정해진 기한 동안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친인척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일부 대학에서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한 구 경영진의 자녀 등 친인척이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학교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학혁신지원사업 핵심과제로 정관 변경을 통해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한 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까지 이사장 선임 제한 명문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제22조	
	3) (제2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54조의2, 제61조	
	4) (제44조) 임용 <input type="checkbox"/> 정관 변경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총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되, 임기 종료 전 총장의 직무 수행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 연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규정명	변경(개정) 사유	관련 법령	발의 부서
	5) (제53조)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정관 제53조 제1항에 명시된 명예퇴직자의 수당 지급을 정하는 규칙은 대학에서 정하므로 제2항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평택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	
	6) (제81조) 법인 사무직원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의 독립적인 분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직에 별정직으로도 확대하여 임용하고자 함		
정관시행세칙	7) (제14조) 대학 교원의 임용 <input type="checkbox"/> 이사장이 총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 및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고자 함 8) 제6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input type="checkbox"/>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변경 전	변경 후
<p>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6.12.7, 2008.6.30., 2009.1.10., 2018.02.19., 2019.3.22.> 2.감사 2인 ②<삭제 2020.09.25.> ③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p> <p>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⑥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2.7., 개정2022.04.27.>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총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p>	<p>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06.12.7, 2008.6.30., 2009.1.10., 2018.02.19., 2019.3.22., 2022.12.00> 2.감사 2인 ②<삭제 2020.09.25.> ③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④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2.00></p> <p>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⑥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2.7., 개정2022.04.27.>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총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없고 이사장 선임 제한 기간은 제25조의2를 따른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3.«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4.«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자</p>

변경 전	변경 후
<p><신설></p> <p>제44조(임용) ①생략 ②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2021.12.06.> ③생략</p> <p>제53조(명예퇴직) ①당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이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1조(법인 사무직원)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하고 부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2015.4.23., 2018.12.04.></p>	<p><u>제2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12.00.></u>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제44조(임용) ①생략 ②총장의 임기는 <u>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3개월 이전에 직무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 연임할 수 있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따른다.</u>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2021.12.06., <u>2022.12.00</u>> ③생략</p> <p>제53조(명예퇴직) ①당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u>대학</u>이 규칙으로 정한다.<<u>개정2022.12.00</u>></p> <p>제81조(법인 사무직원)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교원 또는 <u>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단, 법인사무국의 행정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별정직 국장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의 기간, 처우 및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u> <개정2015.4.23., 2018.12.04., <u>2022.12.00</u>></p>

2)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시행세칙

변경 전	변경 후
<p>제14조(대학 교원의 임용)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9.10.25.></p> <p>1.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p>	<p>제14조(대학 교원의 임용)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9.10.25.></p> <p>1.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u>이사장은 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법인 이사,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동문회, 지역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u>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u>다만, 임기 종료 3개월 이전에 직무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 연임할 수 있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따른다.</u><개정 2019.10.25..></p>
<p><신설></p>	<p>제 6 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u>제22조(구성) 이사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사회에서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u></p> <p>1. 재정분과위원회 2. 노무분과위원회 3. 수익사업분과위원회 4. 지속발전분과위원회</p> <p><u>제23조(분과위원회 심의)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u></p> <p><u>제24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 중 각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에 부의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u> <u>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안이 아니라도 법인과 설치 운영하는 대학의 중요사항을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u></p> <p><u>제2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u></p>

변경 전	변경 후
<p>보 칙</p> <p>제22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p> <p>제23조(규정 등 제정) 학교는 관계 법령, 정관과 이 시행 세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등으로 제정, 개폐하되 이 세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24조(기타 법인규정) 법인사무국에서 필요한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p>	<p><u>호선하며, 이사장이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u></p> <p><u>제26조(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27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각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28조(자문 및 의견 제출) 각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29조(분과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30조(분과위원회의 간사 등)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u></p> <p><u>제31조(분과위원회 회의록)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u></p> <p>보 칙</p> <p><u>제32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u></p> <p><u>제33조(규정 등 제정) 학교는 관계 법령, 정관과 이 시행 세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등으로 제정, 개폐하되 이 세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u></p> <p><u>제34조(기타 법인규정) 법인사무국에서 필요한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12월 00부터 시행한다.</u></p>

[별표 1] 각 분과 위원회별 심의사항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비고
재정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노무	1. 노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 2.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수익사업	1.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체 시설 공사와 이에 관련한 제반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속발전	1. 평택시 및 지역사회, 지역기업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 졸업생 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향후 예정할 정관 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1. 정관 변경 건

1) 개정 사유

<p>(제22조) 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를 5년(정관상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의 임기 또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여 법인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 제기 발생 □ 사학혁신지원사업 핵심과제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기를 한 차례(4년+4년, 최대 8년)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이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독선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함 <p>(제37조) 수익사업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의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부동산업으로 개편하여 수익사업을 확충하고자 함

2) 정관 변경 전후

개정 전	개정 후(의견 수렴 후)
제22조(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②생략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019.10.25.>	제22조(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②생략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2022.12.00.>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 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정관 시행세칙 개정 건

1) 개정 사유

- 대학의 학칙 및 교·직원의 인사, 보수 관련 규정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 제·개정
 정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학사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의 장(총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정관시행세칙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의견 수렴 후)
제3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및 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3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및 학교의 인사, 보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00>

8호, 교직원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1

교직원 징계 위원회 구성(안)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

- 임기 : 2022.03.01. ~ 2023.02.28.(외부위원:2022.03.01.~2025.02.28.)

구분	직책	성명	성별	비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02.16., 2019.10.25., 2022.08.24.>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2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2.16., 2022.04.27.>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항 신설 2017.02.16.>

□ **직원징계위원회 구성(안)**

- 임기 : 2022.03.01. ~ 2023.02.28.(외부위원:2022.03.01.~2025.02.28.)

구분	직책	성명	비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8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3.22.>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법인 이사 2인과 외부위원 1인,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1인은 「정관」 제63조와 제63조의2의 외부위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21-2023)

제51조(각종 위원회 참여)

① 대학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조합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1. 교무위원회(지부장 당연직)
2. 직원인사위원회(지부장 당연직, 조합추천 2인)
3. 직원징계위원회(조합추천 2인)

□ **직원재심위원회 구성(안)**

- 임기 : 2022.03.01. ~ 2023.02.28.

구분	직책	성명	비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8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직원재심위원회 규정」

제2조(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이사
2. 대학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당해 학교에 근속하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
4.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박사 등 법률전문가

1

외부위원 후보자

--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생략

[전문개정 2020.12.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2. 3.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개정 1990. 7. 19.]

[제목개정 2022. 3. 22.]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9. 25.>]

- 2019.11. 사립학교 교원인사담당자 연수 자료

(생략)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상설기구” 임

○ ‘징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아니라 징계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 근거 : 교육부 교원정책과-4056(2018. 8. 9.) ※ 경기도교육청 회신

【교육부회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인지?

[질의]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인지?

[답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가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3년)와 연임(1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설치되는 비상설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4056, 2018.08.09.】

(생략)

9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직전 이사회(2022. 11. 28.)		금번 이사회(2022. 12. 26.)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이 사 장	이계안		
이 사	이대화		
이 사	김지훈		

10호, 기타안건

보고사항

1 제215회 이사회 승인사항 중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건

1. 제215회 이사회 회의록 중 임의특정목적기금 용도 변경 사용 건

2)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 변경 사용 건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추경예산안건과 관련하여 교비회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약 33억원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목적적립금(용자상환) 349,988,252원과 특정목적적립금에 대한 장기예금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3,316,208원까지 총 353,304,460원을 비등록금회계 운영비로 용도 변경하여 인출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류승우 이사가 정이사 체제가 곧 선임 될 예정으로 중차대한 사항은 정이사 체제가 도입된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목적적립금 인출을 전제로 추경안을 올렸는데 임의특정목적기금 용도 변경 승인이 어렵다면 적립금을 인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류승우 이사가 조건부 승인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정이사 체제가 11월 중순이면 선임이 될 것인데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김예희 감사가 지난번에도 특정목적적립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인출 하면 적립금 잔액이 얼마 남는지 묻자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현재 적립금 잔액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지난번에도 특정목적적립금(용자상환)에서 2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비등록금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용자상환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하다.

김예희 감사가 특정목적적립금 인출 안건과 관련하여 앞서 논의되었던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묻자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이 현재 비등록금 회계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안건을 올렸다고 하다. 이어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현재 비등록금회계 잔액이 약 6억원이며 비등록금 회계 같은 경우 고정지출이 많은 편이어서 현재 불안한 상황으로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다.

김예희 감사가 추경안과 관련하여 임의특정목적기금 용도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추경안 자체를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다. 이에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그럴 경우 추경안을 수정하여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다.

류승우 이사가 안건 순서가 임의특정기금 용도변경 안건을 먼저 논의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이사 체제를 도모한 근본적인 이유 중 재정 기여가 중

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하다. 이어 추경안을 이번 이사회에서 하지 않고 정이사 체제가 된 이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하다.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이 정이사 체제는 12월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상환금액은 현재 등록금예산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현재 비등록금 회계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로 특정목적적립금 용도변경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안건 순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나 대학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하다. 이에 대해 김예희 감사와 류승우 이사에게 조언을 구하다. 이에 김예희 감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어 류승우 이사가 특정목적적립금 인출은 중요한 사항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임시이사회에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전진한 이사가 지난번에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특정목적적립금에서 인출 한 적이 있고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에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다.

김민희 이사가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정이사 체제에서 재정적 문제를 논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맞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하다.

이사장이 이준호 이사에게 의견을 묻자 이준호 이사가 특별한 의견은 없고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으로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 현재 비등록금회계 잔액이 6억원 가량으로 만약 적립금 인출로 인한 3억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11월 이후 비등록금 운영자금이 없어 학사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양해를 구한다고 하다.

이사장이 이번 건이 넘어가더라도 또 다른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회계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본인은 정무적 판단의 측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다.

류승우 이사가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되리라 보고 정이사 체제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하다.

최재정 이사가 특정목적적립금이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탐탁지 않으나 융자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현재 융자상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용도변경에 찬성한다고 하다.

류승우 이사가 안건을 통과시키되 소수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이사 체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다. 이에 이사장이 조승래 과장에게 명확히 해당 논의내용을 기록하여 새로운 정이사들에게 예산사항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해달라고 하다.

이사 간 논의한 결과 ‘평택대학교 2차 추경 예산안’과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용도변경 사용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이 기록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정이사들에게 예산현황의 심각성과 해결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리기로 하는 것으로 최재정 이사의 동의와 전진한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2. 제215회 이사회 회의자료 중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사용 건

1 현황 : 교비회계 자원 부족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약 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됨

수입 예상 금액	지출 예상 금액	적자 예상 금액
105억원 - 9/30 기준 통장잔액 92억원 - 향후 추가 예상 수입액 13억원	138억원 - 22.10월부터 23.2월까지	-33억원

2 특정목적적립금 인출

● 2023년 2월 말까지 예상되는 교비회계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목적적립금(용자상환) 349,988,252원과 특정목적적립금에 대한 정기예금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3,316,208원(예상)까지 총 353,304,460원을 비등록금회계 운영비로 용도변경하여 인출하고자 함.

구분	현재 잔액	사용예정액	예상잔액	비고
연구적립금	7,566,639	0	7,566,639	
장학적립금	50,317,741	0	50,317,741	
퇴직적립금	303,364,728	0	303,364,728	
특정목적적립금 (용자상환)	349,988,252	349,988,252	0	해지 이자 미포함
합계	711,237,360	349,988,252	361,249,108	

[참고자료] 용도변경 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1) 임의특정목적적립금 간 용도변경 하는 경우

